

• 새로운 연수 • 튼튼한 연수 • 따뜻한 연수



연수구보



“꿈을 이루는
행복한 연수”

발행·편집인:연수구청장 / 발행처:인천광역시 연수구 / 주소: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호 (우)406-723 ☎ 749-7403 / FAX 749-7399

선	기 관 의 장
람	

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부록 제830호 2014. 10. 27.(월)

【공 고】

-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고 제2014-899호(인천광역시연수구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1
-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제2014-24호(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원
행동강령 조례안 입법예고) ... 7

회							
람							

인천광역시연수구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과 동법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7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위탁대상 시설현황

시설명	소재지	시설규모	보육 정원	개원 일자	위탁 기간	비고
선학 어린이집	연수구 비류대로 602(선학동)	- 지상3층 - 대지면적 : 683.8㎡ - 연면적 : 1,003.1㎡	228명	1993.03.03	2014.12.21 ~ 2019.12.20	시간연장어 린이집

2. 위탁운영기간 :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3. 위탁운영신청자 자격 요건

○ 공통사항

-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재정 능력과 사회복지사업 수행경험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 개인으로서 보육사업(아동복지사업) 종사 경력이 있어야 함
- 법인·단체일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원장 자격이 있는 자를 채용 또는 내정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개인일 경우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1조에 규정한 원장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함

○ 법인·단체일 경우

- 공고개시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법인(또는 단체)의 주사무소가 있고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관련법에 등록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
- 정관의 목적사업에 사회복지사업, 보육사업, 아동복지사업 등 관련 사업내용이 명시된 경우에 한함

- 공고개시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대학(교)가 소재하고 있고 사회복지 또는 영유아보육 관련학과가 설치된 대학(교)

○ 개인일 경우

- 공고개시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4. 신청제외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동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 이내 보육과 관련되는 법령 위반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운영체(자)
- 법인·단체의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위탁체 명의로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 위탁 신청자가 개인일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단, 고용된 원장의 경우 제외)
- 타인(법인, 단체 포함)의 명의를 빌려 위탁운영 하려는 자

5. 위탁 운영 조건

- 위탁범위 : 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 운영재원 : 정부지원 및 영유아보육료 등
- 종사자 보수 : 국공립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 준용
- 보 육 료 : 정부지원 보육료 단가 준용
- 취약보육(영아, 장애아, 시간연장 등)아동 수요발생시 필수운영
- 시설운영 중 부족경비 발생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과 시설운영 능력이 있어야 함
-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음
- 원장을 제외한 교직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승계 하여야 함

- 어린이집 원장 등 인건비 지원 상한제 적용
 - 원장 65세, 보육교직원 60세까지 지원
 - 지급연령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시 인건비 지원 중단
- 보조금을 비롯한 기타 수익재산(보육료 등)의 활용은 어린이집 운영에만 사용해야 함
- 영유아보육에 관한 법령, 보건복지부의 2014년도 보육사업안내 및 인천광역시 보육사업추진계획, 연수구영유아보육조례, 위탁협약서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또는 연수구영유아보육조례 제17조 규정에 의거 위탁을 취소할 수 있음.

6. 신청서 접수

- **공고기간 : 2014. 10. 27 ~ 2014. 11. 10 (15일간)**
- **접수기간 : 2014. 11. 11 ~ 2014. 11. 17 (7일간)**
- **접수장소 : 연수구청 가정복지과 (6층)**
- **접수방법 : 근무시간 내 방문접수(09:00~18:00)**
 - ※ 공휴일 접수 및 우편·인터넷·대리접수 불가
 - ※모든 제출서류는 접수기간(2014.11.11~11.17)내 제출하되, 동산 등 기타 재산(은행잔액증명, 유가증권사본 등 증명서)과 부채증명(개인신용정보조회서)은 2014. 11. 12일자로 발급받아 제출
- **신청자 : 대표자 또는 원장내정자(신분증 지참)**
 - ※ 위임장(임의 작성) 제출 시 위임 가능
- **선정심의일 : 별도 통지**

7. 제출서류

서 류 항 목	운 영 체			비 고
	법인	단체	개인	
1.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0	0	0	
2. 어린이집 위탁운영 계획서 -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계획 등 - 특수교육 및 취약보육 운영계획 등 - 시설운영 및 관리·평가에 관한 계획 등 - 2015년 세입 및 세출 예산서 등	0	0	0	- 영유아의 신체, 정서, 언어, 사회성 및 인지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교육내용 - 취약보육계획 2개이상 포함
3. 재정상태 및 확약서	0	0	0	
4. 위탁운영 신청자 현황	0	0	0	
5. 법인 또는 단체 소개서	0	0		별지 작성
6. 법인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0			
7. 단체등록증 및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0		
8. 어린이집 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등	0	0		
9. 2012년, 2013년 법인(단체)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서	0	0		
10. 2012년, 2013년 법인(단체) 총괄예산 결산서	0	0		
11. 이력서(증명사진) 및 자기소개서	0	0	0	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 원장 내정자
12. 자격증사본(원본지참)	0	0	0	
13. 졸업증명서(최종학교, 관련학과)	0	0	0	
14. 경력증명서(보육 및 아동복지관련)	0	0	0	
15. 채용신체검사서	0	0	0	법인, 단체의 경우 원장 내정자
16. 인감증명서(법인, 단체의 경우 법인, 단체의 인감)	0	0	0	용도 : 어린이집 위탁 신청용
17. 주민등록등본			0	
18. 건물(등기부 등본-공통) - 아파트, 다세대, 연립 : 공동주택 가격확인원 - 단독주택 : 주택가격확인원 - 상가, 기타 : 세목별납세증명서(비고란 과표 기록)	0	0	0	재산입증자료는 공고 개시일 전일까지의 취득분에 한하여 인정
19. 토지 : 공시지가확인원, 등기부등본	0	0	0	개인(부부 재산)
20. 금융재산 - 예금잔액증명서(2014.11.12기준 발행분) - 개인신용정보조회서(2014.11.12현재 전국은행연합회,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서울신용평가정보 중 발행)	0	0	0	- 법인(법인명의 재산) - 단체(단체명의 재산)
21. 기타 자격증(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유치원정교사)	0	0	0	해당자만 제출
22. 복지 및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및 포상, 교육 등 증빙서류 (평가인증 참여확인서, 표창장, 자원봉사, 보육센터 조력활동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0	0	0	

※ 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연수구청홈페이지(<http://www.yeonsu.go.kr>)

고시/공고란 참조

※ 제출서류의 발급일자는 공고개시일 이후여야 함

※ 신청서류는 어린이집 위탁신청서를 첫 페이지로 하여 신청서류에 나열한 순으로 1권의 책자로 제본하여 13부 제출(원본 1부, 사본 12부 제출 / 목차·쪽수 명시)

8. 심사기준 및 선정방법

○ 심사기준 : 보건복지부 2014년도 보육사업 안내 적용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선정관리 권장 표준안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공통심사기준표
- 위탁심사 세부항목별 평가기준안

평가항목	계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대표및 원장전문성	운영체의시설 운영실적	운영체의 공신력	운영체의 재정능력
배점	100	40	35	10	10	5

○ 선정방법

- 연수구보육정책위원회에서 평가표에 의거 서류 및 면접(대표자, 원장 내정자) 심의 후 결정하며, 다수 운영체가 신청하였더라도 신청운영체가 전부 부적격 시에는 재공고하여 모집
-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하고 평균 70점(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 이상의 최다 득점을 받은 운영체로 결정하며 신청자가 단수(한명 또는 한개 법인·단체)일 경우에도 평균 70점 이상이어야 함.
- 결과점수가 동점이 나온 경우에는 어린이집 운영계획, 원장의 전문성, 시설운영실적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면접방법

- 신청한 대표자와 원장내정자(발표 및 응답자)가 함께 출석하여 5분 이내 운영계획 설명과 심의위원 질의응답 순으로 실시하되 법인·단체의 경우 대표자 참석 불가시 해당 법인·단체에 소속된 자로 대표자의 권한위임을 받은자(위임장 지참)의 대리참석 가능(신분증과 재직증명서 등 해당 법인·

단체의소속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히 지참)

○ 선정결과 통보

- 위탁자(체) 선정 익일 개별 통지 및 연수구청 홈페이지 게시

9. 협약체결

○ 수탁운영자로 선정된 위탁체는 지정된 기일까지 연수구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공증하여야 함(공증에 따른 비용은 수탁자 부담)

※ 지정된 기일까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운영자 선정을 무효로 하고, 차순위자와 별도 협약할 수 있음

10. 유의사항

○ 위탁운영조건 등을 사전에 숙지하시고, 사업설명회(현장 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하지 않으므로, 어린이집 현장답사가 필요할 경우 개별적으로 답사 후 서류를 제출하기 바라며, 미숙지 또는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신청자는 심의일(별도통지)에 보육정책위원회에 출석하여 어린이집 운영 계획에 대한 소견을 발표하여야 함(불참시에는 신청포기로 간주함).

○ 제출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공람 또는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무효처리함

○ 영유아보육법 및 기타 관련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11. 기타 사항은 연수구청 가정복지과 보육지원팀 담당자(전화 032-749-7751~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 규칙」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3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 범위 규정(안 제1조 ~ 제3조)
- 공정한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제7조)
-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12조)
- 건전한 지방의회풍토의 조성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제18조)
-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사항(안 제19조 ~ 제20조)
-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21조 ~ 제33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처

- 주 소 : (우406-723)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동춘동 923-5)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의회사무국
- 전화번호 : 032)749-8382 (FAX 749-8349)

4. 붙임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 나.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2. “선물”이란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 “향응”이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에게 적용한다.

- ②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강령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등)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전심의 등”이라 한다)이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안전심의 등 관련 활동을 공정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장과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소명(疏明)하고 스스로 안전심의 등 관련 활동을 회피할 수 있다.

제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의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임용·승진·전보·포상·징계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구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 등(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8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① 의원은 그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의회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의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등) 의원은 각종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2.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다만, 온천장, 관광지 또는 유흥시설을 갖춘 장소 등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또는 편의는 제외한다.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이벤트 등에서 추첨 등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참가자에게 주는 금품등
- ② 의원은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제1항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의원 간 금품 등 수수 행위 금지) 의원은 의회 내의 선거 등 직무와 관련하여 의원 간에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4장 건전한 지방의회풍토의 조성

제13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 ① 의원은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전에 그 활동의 사유·경과,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단체 및 지원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원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아 국내외 활동을 마친 경우에는 그 활동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의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회의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영리행위의 신고) 의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제한하는 영리행위 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금전 거래 등 제한) ① 의원은 상호간에 또는 직무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의원 상호간에 또는 직무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의원은 이를 사전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2. 해당 지방의회의 의원 및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② 의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의장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친족으로부터 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인 경우
2.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인 경우

제18조(성희롱 금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 또는 의회 사무국 직원에게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의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이 강령에 위반 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제21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자 문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④ 의장과 제21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자 문위원회의 위원은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하면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등) ① 제11조, 제12조 및 제17조 제2항을 위반하여 수령이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받거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이러한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실을 알게 된 의원은 금품 등을 제공한 자(이하 “제공자”라 한다)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품 등을 반환한 의원은 그에 대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의장에게 신고한 후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품 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 제공일시 및 처리경위 등을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장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

제21조(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해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이 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이 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제22조(구성 및 임기) ① 자문위원회는 의장 소속 하에 둔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학계·법조계·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행동강령의 운영과 관련되어 공정성·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
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위원이 되지 못한다.

1. 구 공무원
2. 구의회 의원
3. 정당의 당원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
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
라도 해촉할 수 있다. ‘

⑤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
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23조(위원장) ①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
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
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자문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이해관계자와 제7조2호의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하고
있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안의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이 제21조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회의에서 스스로 회피하여

야 한다.

제2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의장으로부터 자문 요청을 받은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부터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 및 장소, 회의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③ 제24조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에 따라 부의 안건을 서면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간사) ①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연수구의회사무국의 의정담당으로 한다.

제27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구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8조(의결사항 통지) 위원장은 자문 의결 후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자문위원의 비밀유지 의무)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회의록)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성명
3. 회의(자문) 내용

제31조(수당 지급) 의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운영세칙) 이 장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33조(행동강령의 운영) ① 의장은 의원에 대한 이 조례의 교육·상담 및 행동 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② 의장은 이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조례 제7조 제1호는 현재 소속 위원회 임기종료 후 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의 건 수 령 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등 심의 3.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4.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5.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6.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7. 기타 문제점		
연수구청장 의견			
협의개요	제출의견	검토내용	